

수원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163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최석광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5. 21. 선고 2020가합1309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112,8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264,7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하면서 증여자의 체납 상태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인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증여세 결정시 증여자가 체납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 1.경 50,000,000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증여세 신고건 중 증여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수증자가 10,000,000원 미만을 체납하였거나 체납세액이 없는 신고건을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위 조사를 통해 2020. 1. 21.경 B이 261,093,98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 21.경 비로소 B이 구체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0. 11.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부터 같은 쪽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지급된 분양대금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B과 혼인한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던 점, ㉡ 피고는 제1심에서 분양대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인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피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피고가 대학 졸업 이후 마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법원에서는 생활비 절약과 피고의 언니를 통해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분양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 피고가 결혼 전 소유한 자금과 2018. 9. 12.경 반환받았다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시기와 금전의 인출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피고의

혼인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㉓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자금이 있었다라도 해당 자금이 평택시 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N블록 아파트 O호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㉔ 피고가 자금의 출처라고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오래전에 발생한 거래내역으로 계좌의 개설과 해지가 빈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형성 경위와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알 수 없어 위 자금의 출처가 오로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㉕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B에 대하여 2016. 6.경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B이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㉖ 피고가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2018. 4. 24. 이 사건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B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가족 간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명의상 인수하고 실제로는 증여자의 재산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부부의 소득원 등 실질내용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10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와 B이 작성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B와 혼인하기 전인 2011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8년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으며, 피고가 B와 혼인한 이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거나 피고에게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2018. 4. 24. B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B에 대한 P 신용정보(을 제9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18. 5. 10.에도 B 명의로 150,400,000원의 중도금 대출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과 같은 쪽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피고가 B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B의 자력이 회복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B의 자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는데, 이때 분양가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소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돈은 계약금 37,600,000원과 1, 2차 중도금 75,200,000원 합계 112,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양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로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증여가액이 264,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264,7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전날인 2018. 4. 19. 중도금 납입계좌에 2차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2. 2. 28.자 준비서면 제2쪽)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112,800,000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11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강선아, 판사 신동주

별지

부동산의 표시

평택시 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L블록 아파트 M호

주택형: 98㎡

건축물 면적: 전용면적 98.7607㎡, 주거공용면적 31.6624㎡, 공급면적 130.4231㎡,

기타공용면적 55.5893㎡, 계약면적 186.0124㎡

대지지분: 60.5222㎡, 끝.

